

##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 연구

### A Study of Industrial Significance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손승표\*

Sung-Pyo Sohn

김기홍\*\*

Kee-Hong Kim

#### 〈목 차〉

- I. 서 론
  - II. 국제 중재의 특성
  - III. 선행 연구
  - IV. 국제 중재의 산업별 유의성 분석 및 개선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국제 중재, 법적 제도, 산업별 유의성, 분쟁 해결

\* 주저자,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부 초빙교수

\*\* 교신저자, 평택대학교 국제물류대학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 I. 서론

국제중재는 대외무역거래 및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분쟁의 규모와 가액이 늘어날수록 국제중재는 더 활발하게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기존 소송 중심의 사법체계에 비하여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2008년 영국 런던 퀸메리 대학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 상사분쟁 해결에 임하는 태도 및 해당 기업들이 선호하는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여,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중재 (IA) 및 대체적 분쟁해결 (ADR)을 국제 소송보다 강력하게 선호함을 유의미하게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글로벌 기업의 법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재가 매우 사적이고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효율적이면서도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우수한 분쟁해결 제도로서, 외부의 불필요한 압력과 간섭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제도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sup>1)</sup>

국제중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해운, 에너지, 석유, 가스, 보험 분야 순이며, 글로벌 기업의 88%는 국제중재 활용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중재 판정의 집행, 절차의 유연성 및 중재인들의 해당분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과 동시에, 국제중재 진행시 시간소요와 국제중재의 비용부분은 향후 국제중재의 법률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국제중재 절차를 통하여 최종 중재판정 집행 단계에 진입하는 기간 내에, 중재판정의 자발적 이행과 양 당사자 간 화해 중결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제분쟁 사례의 81%가 해당국가 법원의 사법적 판단절차 없이 중재판정을 통하여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중재를 통하여 최종 판정을 이끌어낸 케이스들을 대별하고 이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여,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함으로써 국내 중재기관들이 중재관련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적용 시사점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으로서 국제중재 대리업무의 자율화, AAA-ICDR과 PCA 지역사무소 유치,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전문기관 활용 전략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 방안들의 유기적인 도입과 집행을 위한 제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rporate attitudes and practices 2008,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II. 국제중재의 특성

### 1. 국제중재의 법적 특성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중심의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고, 대외무역 의존도가 70%를 넘으며 향후에도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의 성장이 국가 경제 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대외무역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들은 우리나라 법원이나 무역 거래 상대방의 국가 법원에서 사법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국제중재를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 선호되어진다.

국제중재는 분쟁 당사자, 중재인, 중재대리인 등의 이해 관계자들이 각기 상이한 국적을 보유할 수 있고, 국제중재 대상 분쟁이 Cross Border Transaction을 통하여 발생하는 근본적인 발생사유를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의 국내법이 독점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현재까지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자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UNCITRAL이 1985년 채택하고, 2006년에 일부 개정한 UNCITRAL Model 중재법을 통하여 대부분 국가들의 중재방식이 일치되어 가는 국제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2)</sup> UNCITRAL은 1976년 국제적으로 수반되는 무역 거래에서 이용가능한 국제중재규칙인 UNCITRAL Arbitration Rules를 제정, 공표하였으며, 세계 주요 중재기관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중재규칙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들 중재기관들이 관리하는 중재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많다.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다자간투자 규범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가들은 자국민 투자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약 3,000여 개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투자보장협정에 의거하여 무역과 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국제 자유무역협정도 다수 체결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당사국 사이의 국제분쟁이 중재에 회부되는 현상도 증가하였다. 투자분쟁은 1965년 ICSID 협약을 통하여 약 150여 개 국의 국가들이 자국 내에 투자하는 당사국의 자연인 혹은 법인의 투자를 국제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ICSID 중재, 국제 중재기관 활용 중재 혹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한 방식의 국제중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p>3)</sup>

2)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mended in 2006) (이하 모델중재법); 1985년 모델중재법을 근거로 중재관련 입법을 한 주요 국가는 다음과 같다: 호주(1991), 오스트리아(2005), 캐나다(1986), 칠레(2004), 홍콩(1996), 덴마크(2005), 이집트(1996), 독일(1998), 그리스(1999), 헝가리(1994), 아일랜드(1998), 일본(2003), 뉴질랜드(1996), 노르웨이(2004), 필리핀(2004), 한국(1999), 러시아(1993), 싱가포르(2001), 스페인(2003), 태국(2002), 스코틀랜드(1990), 미국내 구성주: 캘리포니아(1996), 코네티컷(2000), 일리노이(1998), 루이지애나, 오레곤, 텍사스(2000)

국제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중재 사유가 되는 실체적 준거법 그리고 국제중재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절차적 준거법의 내용이 일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가액이 일반 국내 사례와 비교하여 그 액수 면에서 규모가 상당하고, 분쟁 관련인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 자체이거나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개인들이므로 국제중재 사건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특정 국가 이외에서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한 외국변호사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법률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전문성을 보유한 교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법인에서 In-house lawyer로 근무하는 변호사, 정부 기관의 법률 고문 등이 모두 포함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중재의 규모와 현황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진행 및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국제중재 통계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국제중재 절차가 다수 우리나라를 근거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우리나라의 대형 법률회사들은 자신들의 중재절차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사례를 보면 중재 관련 당사자들이 우리나라 법인이지만 실제로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해외 투자 법인들이 다수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주 중재지를 미국 뉴욕으로 정하고 관련 중재인들도 외국인으로 선정하여 진행한 바 있다.<sup>4)</sup>

국제중재 진행 절차는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중재판정부 관할권 여부 관련 판단, 본안 관련 증인 심문절차, 심문방식, 감정증인 활용, 분쟁 내용 적용 준거법, 중재절차 적용 준거법 결정, 손해배상금 판정 적용 법원칙, 최종 중재판정 적용 준거법 결정과 같은 국제법적 적용 문제들이 매우 복잡하게 결부되므로, 다양한 국내법 원칙과 국제법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매우 많다. 중재절차가 어느 정도 복잡하게 진행되는지는 분쟁가액 규모, 중재절차 진행기간, 분쟁 관련 당사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조합으로 결정되며, 특히 국가가 관련 당사자가 되는 투자 분쟁의 경우는 관련 정책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 2. 국제중재의 제도적 특성

법무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진행되면서, 이 분야 서비스 교역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장 강점을 보이는 서비스 교역 중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법무서비스의 규모가 괄목할만한 수치로 증대되고 있고, EU의 경우도 역내 및 역외 법무서비스

3)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협약 - 일개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4) 한화 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관련 국제중재 사례 - 2008년 김&장 법률사무소 중재팀과 Simpson Thacher의 공동 진행으로 ICC 중재를 진행하였으며, 중재판정부는 Marc Lalinde를 의장 중재인으로, Abraham Sofaer, Michael Reisman을 중재인으로 구성,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하여 뉴욕을 중재지로 진행함.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sup>5)</sup>

국제중재는 관련 중재절차 대리인으로 미지정되어 있더라도 자국 법이 관련되거나, 중재지가 자국이거나 혹은 자국에서 중재절차의 일부가 진행되는 경우 자국 변호사가 법률 컨설팅이나 관련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발생한다.

1980년대 초, 중재관련 국내법 개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중재관련 국내법 제정과 개정은 중재절차에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가 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프랑스 경우, 중재관련 법 규정에서 중재판정 취소사유는 매우 간명하다. 프랑스 법원은 준거법이 프랑스법이거나, 중재지가 프랑스 영토 내라고 하더라도 국제중재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EU내 영국과 독일에도 중재법 관련 ‘우호적 분위기’를 반영하도록 하는 영향을 끼친 바 있다.

국제중재 절차가 적극적으로 수행되는 각국에서 국가의 사법체계가 중재지 법원으로서 국제중재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제중재 판정의 취소사유 또한 제한함으로써 국제중재 판정 승인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법률 산업적 이익이 담보된 국제중재를 자국 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면에서 Model 중재법은 각국 중재법 개정 혹은 제정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는데, 이는 이를 채택한 국가에서 주재하는 국제중재는 중재지의 해당 법원이 모델중재법에서 미리 정한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sup>6)</sup>, 중재절차와 동일한 해당국의 법원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고, 관련 중재판정의 승인과 판정의 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제도적 신뢰를 국제중재 이용자들에게 준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중재 절차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중재인 또는 중재대리인들이 중재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화상회의 방식 혹은 전자통신 방식으로 자료의 제출<sup>7)</sup> 및 중재인 간 평의가 이루어진다. 중재 판정부는 법적 중재지가 정해져 있어도 중재 심리 편의상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중재 심리를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3. 주요 국제 중재기관의 유치

일반적으로 국제중재는 국제중재기관을 통하여 관리되고 수행되어진다. 개인 사이의 국제중재는 일반적으로 AAA, ICC, LCIA, SCC와 같은 중재기관이 주로 수행하고 있고,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국제중재는 ICSID 및 SCC와 같은 중재기관을 통하여 다수의 국

5) Massimo Geloso Grosso, “Managing Request-Offer Negotiations under the GATS :The Case of Legal Services,” TD/TC/WP(2003)40/Final, para.7.

6) 모델중재법 제5조에 따르면 중재지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되고 있다. “Article5 (Extent of court intervention) In matters governed by this Law, no court shall intervene except where so provided in this Law.”

7) Smit and Robinson, “E-Disclosur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4 No. p.129. 2008.

제중재를 유지하여 수행 및 관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많은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 및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재기관으로서 KCAB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국제중재 관리 경험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북아 환태평양 및 동해권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중재기관을 유치 및 운영하는데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측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자원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북한, 아울러 경제의 고도화를 이룩한 일본과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는 향후 이 지역 내에서의 급속한 국제중재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세계적으로 국제중재를 많이 유치하는 국제중재기관들은 해당 기관의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국제중재의 주도적인 흐름을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중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현지 로컬 로펌 및 기관들과의 제휴 관계를 늘려가고 있다.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상설중재법원(PCA,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PCA의 설립근거가 되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규정에 따라서 현재 4인의 예비중재인을 중재인 명부에 올리고 있다.<sup>8)</sup> PCA는 자국 이외 지역에 PCA 지역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와 주재국 협정(Host State Agreement)을 체결, 국제중재 관련, 아시아 지역에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중재 및 상사중재 법적 기관으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KCAB는 세계 주요 국제중재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국제화의 기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제중재를 서비스 무역 관점에서 산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PCA와 같은 EU기반 국제중재기관의 지역사무소를 유치하는 방안과, AAA와 같은 미국 중심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국제중재와 조정을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중 보다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8) 강병근,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규율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8.

### Ⅲ. 선행연구

이로리(2017)는 ‘조정인 인증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하여,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거로는 각 국가별 조정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조정의 질 확보가 중요한 선제적 요건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정인 인증제, 민간주도형 인증제, 국가관리형 인증제 등의 제도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조정교육의 커리큘럼은 조정실무 수행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조정인의 역할, 조정절차, 조정커뮤니케이션, 현상 및 조정기법,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과 관련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조정인의 공정성 및 중립성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형태의 효과적인 조정절차의 제도화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sup>9)</sup>

이영민(2017)은 ‘A Study of the Arbitration Issue on the Korea and the U.S. FTA’에서 한미 FTA에서 분쟁해결 절차로 합의된 ISD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의 불완전성과 투자국 법원을 통한 소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sup>10)</sup> 또한 FTA와 같은 국제투자 협정에 있어서 해외투자 관련 부분은 반드시 중립적인 제도의 도입과 내용에 대한 보안관련 문제가 보증되어야 하는 필수 요인이 필요함을 소개하였다.<sup>11)</sup> 이에 더하여 한미 FTA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일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역량을 분쟁해결 분야에서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남선모(2016)는 ‘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에서 현행법상 제도화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포함하여,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 중 법원의 사법체계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즉, 의료분쟁 관련 ADR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과 민형사상 책임과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중재관련 조정신청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 아닌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모든 의료관련 사고로 확대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의료사고 피해환자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sup>12)</sup>

신군재(2016)는 “중재합의 문제로 인한 중재절차 지연에 관한 연구”에서, 중재합의의 개념과 협상, 중재합의 문제로 인한 중재절차 지연사례를 분석하고, 기존에 문제가 발생하였

9) 이로리, “조정인 인증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 미국 및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7권 제2호, 2017.

10) 이영민, “A Study of the Arbitration Issue on the Korea and the U.S. FTA”, 중재연구, 제27권 제2호, 2017.

11) J. E. Alvarez,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Regime Governing International Investment*, Brill, July 1, 2011.

12) 남선모, “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2016.

던 중재합의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추후 계약 실무자들이 중재합의를 위한 협상시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정책과 도입 실무를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재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점은 중재의 개념이나 중재합의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사회적 합의에 그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한국에서 중재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재합의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인식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중재합의는 계약서 이면약관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신중하게 관련 내용을 검토없이 거래를 수행하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계약의 세부 조건처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등 절차적 기준을 무시하여 관련 중재 절차가 지연되거나 혹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통하여 중재합의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 중재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무자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재서비스 이용자들은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중재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중재절차로 최종 해결이 완료되더라도 본인들에게 불리함이 없는 결과를 도출하는데에 이러한 중재합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글로벌 법률 환경에서, 중재가 기존 사법 체계의 소송이나 여타 분쟁해결수단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정부 및 중재기관은 중재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질적으로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강수미(2017)는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에서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기본 토대로, 법적 분쟁해결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중재의 실체에 부합할 수 있는 견지에서 중재합의의 효력을 검토하였다. 중재를 통해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사법체계 내의 분쟁해결 수단인 판결과 다를 바가 없지만, 판결은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그 집행이 이루어지고, 결과 절차가 정형적이고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하고, 승인 및 집행이 불가한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 및 집행이 각각 다른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바, 동일한 중재판정이 복수의 규율을 적용받아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경합하거나 모순 및 저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sup>14)</sup>

13) 신군재, “중재합의 문제로 인한 중재절차 지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2016.

14)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2017.



## IV.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

상사중재의 발전과 더불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중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법적 분야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 연간 신건 기준 800건 내외의 중재 사건을 접수하는 ICC 국제중재법원의 통계를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1년간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통계는 350건으로 일본의 240건이나 싱가포르의 217건 보다 훨씬 더 많고 중국의 376건 (홍콩이 당사자인 경우 176건 제외)과 비슷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이에 새로운 법률 시장의 돌파구로 인식 가능한 국제중재 분야에 있어서의 산업별 유의성이 가지는 의미와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중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1. 중재 판정 관련 사전조치 중요성

#### (1) 사전적 보전조치의 필요성

집행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로서, 실무적으로 중재판정의 집행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선의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나아가 비합리적인 상대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집행을 회피하고자 자산을 감추는 경우에는 유리한 중재판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당사자라 하더라도 중재판정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지 때문이다. 예컨대, 피신청인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어려운 지역을 물색하여 이러한 곳에 본인 소유의 잠재적 집행대상 자산을 숨겨놓는 경우, 신청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획득한 중재판정문은 그 효력의 발생에 반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청인으로서 중재판정을 얻기 전, 또는 심지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상대 당사자의 자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sup>16)</sup>

#### (2) 법원을 통한 보전조치

중재를 위한 사전적 보전조치는 중재판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중재에 관한 보전조치를 명할 권한은 중재판정부 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

15) 김갑유, “외국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국제중재의 현황과 전망”, 중재논단, No.345, pp.54-59, 2016.

16) 임성우,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중요성”, Lee&Ko Newsletter, 2014.

원에게도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중재 초기 단계에서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중재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매각하는 등의 집행 면탈행위를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재와 관련된 주요 자산이나 정보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법원을 통한 잠정처분은 매우 효과적인 보호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법원을 통하여 중재를 위한 잠정처분 (Provisional measure in aid of arbitration)을 얻어내는 것은 국제중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보전 방법이기도 하다.<sup>17)</sup>

이와 같이,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제중재를 위한 자국 사법체계 내에서의 협조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이 속에서, 해당국의 법원 집행을 통한 보전조치는 국제중재에서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중재 절차 착수 단계에서부터 해당국의 법원을 통한 적절한 보전조치들을 활용하여 사전에 집행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 2.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

### (1) '국제중재 사건 대리' 규정 관련, 적용법 제한의 어려움

국제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국제거래에서는 관련 국제중재 적용법 혹은 해당 준거법 조항과 관련 중재조항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거법에 관련된 법조항이 양 당사자 간 계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중재조항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서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다는 국제법적 취지를 규정한다. 국제거래 계약에서 해당 거래의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법상의 다양한 국제법적 원칙들을 선택 적용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 국제법 일반원칙, 또는 국제 상관습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할 것이다. 국제중재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중재지의 특정 강행규정이 국제중재와 관련한 적용 준거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정함으로써 국제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법원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존재한다.<sup>18)</sup>

그 동안 국내에서는 적용법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대리행위를 사실상 허용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 외국변호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국제중재절차의 경우 법률을 상관하지 않고 외국변호사가 중재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국제중재의

17) 임성우,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중요성”, Lee&Ko Newsletter, 2014.

18) PT Putrabali Adyamulia (Indonesia) v.; Respondent: Rena Holding., Cour de Cassation, First Civil Chamber, 29 June 2007; PHILIPPE PINSOLLE, The Status of Vacated Awards in France: the Cour de Cassation Decision in Putrabali.;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24, No.2, pp.277-295. 2008.

경우, 중재대리인의 자격 인정국 법률이 관련 적용법이 아닌 경우, 해당 적용법 인정 국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국제중재의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특정 국가의 적용법을 근거로 하여 중재대리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제중재 주도국의 경우에도 국제중재대리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한미 FTA 협정 내에서도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업무가 제한없이 서비스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9)</sup>

## (2) 국제중재와 국내중재 구분의 모호성

국제중재 사건의 대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중재지와 적용법이 국제중재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국제 (international) 라는 용어는 통상 국내 (domestic / national) 중재와 아울러 일정 국가의 사법 권한이 넘어서는 국제중재를 구분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어느 중재이든지 중재지를 가지고 있고, 해당 중재지는 특정 국가에 반드시 위치하게 되므로, 모든 중재는 결국 국내중재라는 주장도 있다.<sup>20)</sup> 그러나 ICSID 중재와 같이 관련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중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중재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와 국내중재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현재 국제중재의 개념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바가 없어, 각국은 어느 중재가 국제중재인지, 그리고 그 중재로부터 판정되어진 중재 합의가 국제중재 판정인지의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한 1958년 뉴욕협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뉴욕협약은 외국 (foreign) 중재판정에 대해, 해당 중재판정의 관련 승인 및 판정의 집행이 제기된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으로 정의하면서도, 중재 판정의 집행 국가에서 국내중재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재판정 또한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6월 29일 대법원이 승인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11. 9. 1. 발효)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국제중재”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및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및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제중재인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칙이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가 우선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원칙적 구분이 명확하다.

19) 김갑유, “한미 FTA 체결과 법률시장 개방 이후 전망 - 외국법자문사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조, Vol.615, p.59. 2007.

20) Mann, ‘Lex facit arbitrum’ in. 2, Arbitration International., pp241-244. 1986.

(3)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

제4차 Fullbright & Jaworsk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국 내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국제중재를 진행한 경우가 미국계 회사 42%, 영국계 회사 73%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경우, 중재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분야는 도소매업, 제조업과 에너지산업 분야였고, 영국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된 중재분야는 금융서비스, 보험 및 도소매업 분야였다.<sup>21)</sup> 이 조사에 의하면 미국계 회사들이 국제중재기관으로 가장 선호하는 기구는 AAA-ICDR이었고, 영국계 회사들은 LCIA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국제중재 사건을 국내에 유치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중재 전문 중재기관을 유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sup>22)</sup>

〈표-1〉 국제중재 산업별 선호 중재기관 비교표<sup>23)</sup>

산업 구분	1위	2위	3위
교육	AAA-ICDR	-	-
에너지	AAA-ICDR	ICC	UNCITRAL / CPR
엔지니어링 / 건설	AAA-ICDR	-	-
금융서비스	LCIA / AAA-ICDR	ICC / CPR	UNCITRAL
보건	AAA-ICDR	LCIA / ICC	CPR
보험	AAA-ICDR	CPR / LCIA	ICC
제조	AAA-ICDR	CPR / ICC	WIPO / UNCITRAL
부동산	AAA-ICDR	-	-
도소매업	AAA-ICDR	ICC	UNCITRAL / LCIA / CPR
기술 / 커뮤니케이션	AAA-ICDR / ICC	LCIA / CPR	UNCITRAL

\* AAA-ICDR: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CP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1) Fourth Annual Litigation Trends Survey Findings, p.29.  
 <<http://www.fulbright.com/index.cfm?fuseaction=correspondence.littrends07>>  
 22) Fourth Annual Litigation Trends Survey Findings, “Preferred Arbitral Institutions and/or Rules”, p. 33; “Arbitrations Commenced Against Companies”, p.34.  
 23) Preferred Arbitral Institutions and/or Rules: Fulbright & Jaworski Fourth Annual Litigation Trends Survey Findings, p.32.

〈표-2〉 국제중재 산업별 통계 비교표<sup>24)</sup>

구분	총계	주요산업									
		교육	에너지	엔지니어링/건설	금융서비스	보건	보험	제조	부동산	도소매업	기술/커뮤니케이션
참여 자수	108	7	22	9	16	4	7	12	2	7	9
조정	16	50%	18%	22%	13%	0%	14%	17%	0%	14%	22%
중재	16	25%	23%	22%	25%	0%	14%	8%	0%	29%	0%
소송	9	50%	9%	11%	6%	0%	14%	8%	0%	29%	0%
분쟁 없음	70	70%	25%	59%	69%	100%	86%	75%	100%	71%	56%

**(4) 제도적 대안의 필요성**

국제중재를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주요한 경쟁력있는 법률관련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제도적 대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제도적으로 유의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국제분쟁의 성격과 함께 국적요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외국법 관련 자문사 혹은 외국법 컨설팅 사무소는 법률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법률컨설팅 혹은 법률사무를 서비스할 수 있는 국제중재 범위는 다음에 한정한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 체결지 혹은 중재합의 당사자의 법인 설립지, 주거지, 혹은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상거래 혹은 당사계약의 대상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 외국이어야 하며, 이들과 우리나라가 물리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상거래 혹은 당사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일체가 외국에서 이행되어야 한다.<sup>25)</sup>

둘째, 외국법 자문사 법안 관련 국제중재사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여야 한다. 외국법 관련 자문사 혹은 외국법 컨설팅 사무소가 우리나라 법을 국제거래 혹은 국제계약 체결시 사용하도록 사건 위임 의뢰인에게 권장하는 것을 독려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동북아 지역의 국제중재 서비스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외국법 컨설팅 사무소와 이들이 고용하는 한국 국적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국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계약에 근거한 국제중재 당사자의 법적인 권리와 책임 소재에 대하여 중재제기 통지 전후에

24) Fifth Annual Litigation Trends Survey Complete Data Findings, Table.8.  
 25) 강병근,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규율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8.

대한민국 법을 근거법으로 하는 국제상사절차 법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국제중재의 경우 변호사는 국적이나 자격 인정국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 근거지를 둔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중재대리인으로서 해당 분쟁해결에 참여하는 실제 현실을 반영하여 자국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를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국제분쟁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키며 손해배상을 통해 국제수지 및 국민경제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제무역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최근 추세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늘날 국제중재가 이와 같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신속성과 경제성, 중재인의 전문성 및 중재관련 내용의 기밀성 등의 법적 효율성과, 국제소송 관련 국제재판관할권 문제, 준거법 합의 문제, 국제사법공조 문제, 외국판결 승인 및 집행 문제 등과 관련한 상이한 제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효율성이 기존 사법 체계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이다.<sup>26)</sup>

각국은 자국의 사법체계 내에서의 법원 판결보다는 국제중재 방식을 통한 분쟁 해결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국제중재 영역에 대하여는 인위적 통제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성 개념이 접목되어진 국제거래 분쟁의 결과에 대한 통제 권리를 포기하면서,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집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1. 국제중재 대리업무의 자율화

현재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윤리기준이나 규제는 없다.<sup>27)</sup> 국제중재에 대해서 각국은 의도적으로 주권행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국제중재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진행되는 국제중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하며, 중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중재와 관련되는 법률 컨설팅 및 법률 사무는 해당 국가가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체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6) 오석웅, “국제거래분쟁의 처리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과 과제”,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pp.21-43. 2006  
27) Catherine A. Rogers, Fit and Function in Legal Ethics: Developing a Code of Conduct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s, 23 Mich. J. Int'l L. 341, pp.357-373. 2002.

## 2. 국제중재 및 조정기관 전문기관 활용

우리나라의 경우 각급 법원의 조정 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조정기관이 필요하고 더 많은 국제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LCIA, ICC, AAA, PCA 등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의 해외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국제중재 및 조정 기관의 전문 경험을 체득하여 향후 국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국제중재의 산업별 유의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국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부문 등의 산업에서부터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강병근,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규율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8.
-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2017.
- 김갑유, “외국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국제중재의 현황과 전망”, 중재논단, No.345, pp.54-59, 2016.
- 김갑유, “한미 FTA 체결과 법률시장 개방 이후 전망 - 외국법자문사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조, Vol.615, p.59. 2007.
- 남선모, “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2016.
- 신군재, “중재합의 문제로 인한 중재절차 지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2016.
- 이로리, “조정인인증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 미국 및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7권 제2호, 2017.
- 이영민, “A Study of the Arbitration Issue on the Korea and the U.S. FTA”, 중재연구, 제 27권 제2호, 2017.
- 임성우,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중요성”, Lee&Ko Newsletter, 2014.
- 오석웅, “국제거래분쟁의 처리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과 과제”,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pp.21-43. 2006.
- Catherine A. Rogers, Fit and Function in Legal Ethics: Developing a Code of Conduct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s, 23 Mich. J. Int'l L. 341, pp.357-373. 2003.
-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rporate attitudes and practices 2008,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J. E. Alvarez,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Regime Governing International Investment, Brill, July 1, 2011.
- Mann, “Lex facit arbitrum” in, 2, Arbitration International, pp.241-244. 1986.
- PT Putrabali Adyamulia (Indonesia) v.; Respondent: Rena Holding., Cour de Cassation, First Civil Chamber, 29 June 2007; PHILIPPE PINSOLLE, The Status of Vacated Awards in France: the Cour de Cassation Decision in Putrabali.,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24, No.2, pp.277-295. 2008.
- Smit and Robinson, “E-Disclosur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4 No. p.129. 2008.



## ABSTRACT

### A Study of Industrial Significance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ung-Pyo Sohn

Kee-Ho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key issues and to categorize international arbitrations on industrial significance. Thus this study focused on synthesizing industrial significance, retai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ing national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a legal service trade system. To obtain these goals,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xy service, invit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oard regional offices such as PCA to AAA-ICDR, and drawing of international mediation institutions to invigorate the legal service market should be exerted. To revitaliz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t would be renounced the control rights of economy-related disputes with internationalism while policies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execution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awards.

It is emphasized the necessities of the process through the institutional mediation agency to resolve more court mediation and international dispute cases, and to handl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fter training professional legal experience through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boards such as LCIA, ICC, AAA, and PCA. Ultimately, to revitaliz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industrial significance of arbitration should be analyzed and the critical industrial influence of arbitration such as in the semiconductor, petrochemistry, and ICT sectors should be expanded to g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global legal service market with the assistance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y measures.

**Key Words** : International Arbitration, Legal System, Industrial Significance, Dispute Resolution